##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2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오세희·이병진·허성무

김태년 · 장철민 · 김태선

전진숙 · 안태준 · 김동아

김현정 · 김우영 · 정진욱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 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

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가맹점의"를 "가맹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 4.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 ④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제1항제3호 중 "제26조의5"를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의5( <u>가맹점의</u> 준수사항) ① | 제26조의5( <u>가맹점 등의</u> 준수사항) |
|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            | ①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
| 여서는 아니 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
|                             | <u>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u>       |
|                             |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             |
|                             | <u>는 행위</u>                 |
| <u>&lt;신 설&gt;</u>          | 4.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           |
|                             | 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④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             |
|                             | 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
|                             | <u>아니 된다.</u>               |
|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등) ①                        |
|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             |                             |
| 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             |                             |
| 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                             |
|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u>제26조의5</u>를 위반하는 행위 를 한 경우

② ~ ⑥ (생 략) <신 설>

제72조(벌칙) (생략)

<신 설>

\_\_\_\_\_

-----

- 1. 2. (현행과 같음)
- 3. <u>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u> <u>지의 어느 하나</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9(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 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 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 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